

# 인천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 3. 19.(목)  
산업경제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6. 3. 4.

나. 발 의 자: 신성영 의원(대표발의)

다. 회부일자: 2026. 3. 6.

라. 상정일자: 제30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2026. 3. 19. 상정 · 의결)

- 제안설명: 신성영 의원
- 검토보고: 신현진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시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 성장기반 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제4조)
- 기본계획의 수립, 이차전지산업 육성과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5조~제6조)
- 위원회 관련 사항, 기업 등의 유치, 산학연 협력체계, 사무의 위탁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제10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가. 필요성 및 법적근거

- 이차전지산업은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 등 미래 친환경 산업의 핵심 기반 산업으로, 국가 전략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연계된 고부가가치 산업임.
- 이에 이차전지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산업 지원사업 추진, 기업 유치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역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 본 조례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sup>1)</sup>에서 규정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략산업 육성·

보호 책무를 반영하여, 국가 정책 방향과 연계한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나. 세부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총 10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1〉 조문 구성

제1조(목적)	제7조(이차전지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2조(정의)	제8조(기업 등의 유치)
제3조(시장의 책무)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0조(사무의 위탁)
제5조(이차전지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부칙
제6조(이차전지산업의 육성 및 지원)	

### ○ 안 제1조 (목적)

- 인천광역시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해 산업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산업등이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전략산업등의 육성 및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전략기술을 보유하거나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전략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기반 조성 및 전략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안 제2조 (정의)

- 제1호는 이차전지를 외부의 전기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전환·저장하고 충전 및 방전이 가능한 전지로 정의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제2호는 이차전지산업의 범위를 이차전지 완제품, 소재, 핵심 광물, 부품·장비, 소프트웨어, 재사용·재활용 등 관련 서비스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연구·개발부터 생산·공급·사업화에 이르는 전 주기 산업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규정으로 판단됨

## ○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 시장이 이차전지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정책추진의 실행력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 안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조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관련 조례와의 관계를 정립하고 적용상의 혼선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 안 제5조 (이차전지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 제1항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여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제2항은 이차전지산업 육성의 기본방향과 산업 동향 및 전망, 기업 성장 지원,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지원 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명시하여 정책 추진의 방향과 내용을 구체화하였음.
- 제3항은 자료 요청 및 전문기관 연구 의뢰 근거를 두어 기본계획 수립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 ○ 안 제6조 (이차전지산업의 육성 및 지원)

- 제1항은 정책·제도 연구, 실태조사, 지원시설 설치, 전문인력 양성, 전문기관 유치, 연구·기술개발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산업 육성 근거를 마련한 것임.
- 제2항은 대학, 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 기업·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임.

#### ○ 안 제7조 (이차전지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 제1항은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주요 시책, 산업 현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근거를 규정하여, 정책 추진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임.
- 제2항은 위원회의 기능을 기존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에너지위원회가 대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유사 위원회의 중복 설치를 방지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 안 제8조 (기업 등의 유치)

-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 및 연구·교육기관 등의 유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여 지역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산업 집적화를 촉진하려는 조항으로 보임.

#### ○ 안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등)

- 산업계·대학·연구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인력 양성, 연구·기술개발, 기술 이전, 학술교류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산·학·연 연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 ○ 안 제10조 (사무의 위탁)

- 제6조에 따른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사무를 출자·출연기관, 대학, 연구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다만, 위탁 대상 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업 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운영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산업 지원사업 추진, 기업 유치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신성장 산업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친환경 산업 확대에 따라 이차전지산업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 다만, 향후 조례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이차전지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추진 전략 마련과 함께 관련 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산·학·연 협력사업 등에 대한 세부 추진 방안과 운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인천지역 이차전지 관련 기업/유관기관 현황>

구 분	계	소부장	재활용	연구	유관기관
이차전지 관련 기업(기관)	19	14	1	3	1

※ 출처 : 신재생에너지과

####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 5. 토론요지

가. 찬성: 김유곤, 신성영, 나상길, 이강구, 이명규, 이순학 위원

나. 반대: 없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 7. 기타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붙임]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 성장기반 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차전지”란 외부의 전기에너지를 화학에너지의 형태로 전환하여 저장하는 장치로서 적합한 사용 수명을 가지고 충전 및 방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전지를 말한다.

2. “이차전지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연구·개발·실증·설계·제작·생산·가공·공급·서비스하거나 사업화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셀(cell), 모듈(module), 팩(pack) 등 이차전지 완제품

나. 양극재·음극재· 전해질·분리막 등 이차전지 관련 소재

다. 리튬·니켈·코발트·망간 등 이차전지 소재 관련 핵심 광물

라. 이차전지 관련 부품·장비 또는 설계, 지적재산권, 소프트웨어

마. 이차전지의 재사용·재제조·재활용·유지보수·이력관리 등 관련 서비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차전지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차전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이차전지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이차전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이차전지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차전지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이차전지산업의 국내외 동향 및 발전 전망
3.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성장·지원에 관한 사항
4. 이차전지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이차전지산업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이차전지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차전지산업 관련 정책·제도의 연구·조사
2. 이차전지산업의 실태조사
3. 이차전지산업 관련 지원시설의 설치
4. 이차전지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5. 이차전지산업 관련 전문기관 유치
6. 이차전지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 개발 지원
7.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 기업·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이차전지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이차전지산업육성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이차전지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이차전지산업에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
3. 이차전지산업 현안
4.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제13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에너지위원회가 대신한다.

제8조(기업 등의 유치) 시장은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의 본사·공장·연구소,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산업계·대학·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확산을 위한 연구·기술개발
3. 기업 등으로의 기술 이전 및 자문
4.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외 학술대회·워크숍 등의 개최, 유치, 참가
5. 이차전지산업 관련 학술단체 및 연관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이차전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출자·출연기관, 대학, 연구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